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2014. 3

조재린 · 김해식 · 김석영

머 리 말

현재 보험산업에 대한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저성장·저금리의 장기화이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미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재정위기와 엔저 현상으로 인해 대외 여건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저금리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저성장으로 보험수요가 위축되면 보험 영업수지가 감소할 것이고, 저금리 장기화는 투자수익률 하락과 이차역마진 확대로 이어져 투자수지 악화가 심화될 것이므로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는 보험회사 생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은 저성장·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비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를 재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위험기준자본규제(RBC)에서는 금리역마진위험이 신설되었고, 보험 및 신용·금리위험의 위험계수 신뢰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회사위험을 반영하는 연결기준 RBC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준비금 재원인 보험료 조정이 쉽지 않고 가용자본 확충을 위한 이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RBC 규제뿐만 아니라 준비금 평가나 보험료 조정에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규제의 우선순위와 완급조절이 전산업적 관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모쪼록 이 보고서가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의 국제적 추세를 점검하고, 국내 RBC 규제와 보험회사 위험관리 과제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험회사 지급여력 규제 강화 로드맵 마련에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4년 3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강 호

■ 목차

요약 / 1

I. 서론 / 10

1. 연구목적 / 10
2. 선행연구 / 13
3. 연구범위와 방법 / 15

II. 국내 지급여력규제 현황 / 17

1. 보험회사 지급여력의 개념과 현안 / 17
2. 지급여력에 대한 정량평가 / 19
3. 지급여력규제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 22
4. 금융감독당국의 RBC 강화 계획 / 24

III. 해외 지급여력규제 추세 / 28

1. EU Solvency II / 28
2. 미국 RBC/SMI / 31
3.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 34

IV. 지급여력규제 강화 영향 평가 / 36

1. RBC 강화 영향 / 36
2. 부채시가평가의 영향 / 40
3. RBC 강화와 부채시가평가의 병행 가능성 / 43

V. 국내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45

1. 지급여력규제의 국제적 정합성과 RBC 강화 계획 평가 / 45
2. 지급여력규제 개선 로드맵 / 49
3. 금융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54

■ 목차

| 참고문헌 | / 57

| 부록 | / 59

부록 I : 가용자본의 산출 / 59

부록 II : 부채적정성평가 / 60

■ 표 차례

- 〈표 Ⅱ-1〉 금융감독당국의 RBC 강화 계획(2012~2015) / 25
- 〈표 Ⅱ-2〉 금융감독당국의 RBC 강화 계획 이외의 규제 현황 / 27
- 〈표 Ⅲ-1〉 유럽 Solvency II와 미국 RBC의 비교 / 33
- 〈표 Ⅲ-2〉 RBC 도입 시기 / 34
- 〈표 Ⅳ-1〉 신뢰수준 상향 조정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예시) / 38
- 〈표 Ⅳ-2〉 신뢰수준 상향 조정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율(생명보험) / 38
- 〈표 Ⅳ-3〉 신뢰수준 상향 조정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율(손해보험) / 39
- 〈표 Ⅳ-4〉 RBC 비율별 생명보험회사 수 : RBC 제도 강화 전과 후 / 39
- 〈표 Ⅳ-5〉 RBC 비율별 손해보험회사 수 : RBC 제도 강화 전과 후 / 39
- 〈표 Ⅳ-6〉 부채시가평가 시 RBC 비율별 생명보험회사 수 / 43
- 〈표 Ⅳ-7〉 RBC 강화와 부채시가평가 병행 시 RBC 비율별 생명보험회사 수 / 44

■ 그림 차례

- 〈그림 I-1〉 미국의 생명보험회사 파산 추이(1976~2009) / 10
- 〈그림 I-2〉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강화와 지급여력규제의 국제적 추세 / 11
- 〈그림 I-3〉 보험회사 지급여력 관련 규제 / 13
- 〈그림 II-1〉 자산과 부채의 평가와 위험기준 지급여력규제 / 19
- 〈그림 II-2〉 국내 보험회사의 RBC 비율 현황 / 21
- 〈그림 II-3〉 국내 보험산업의 RBC 비율 추이 / 22
- 〈그림 II-4〉 위험기준 지급여력규제 : RBC와 RAAS / 23
- 〈그림 II-5〉 요구자본 산출과 RBC 강화 계획 / 26
- 〈그림 III-1〉 EU Solvency II의 구성 체계 / 30
- 〈그림 III-2〉 ORSA 절차 / 32
- 〈그림 IV-1〉 신뢰수준 상향 조정에 따른 영향 / 36
- 〈그림 IV-2〉 부채시가평가에 따른 RBC 비율 감소 / 41
- 〈그림 V-1〉 지급여력규제의 국제적 추세 / 45
- 〈그림 V-2〉 Solvency I 대비 Solvency II 요구자본 수준 (QIS 5) / 48
- 〈그림 V-3〉 지급여력규제의 지역별 대응 / 49
- 〈그림 V-4〉 지급여력 규제 로드맵 제언 / 53

A Road Map to the Strengthening of an Insurer's Solvency

Insurers will face two big challenges in Korea: Solvency capital requirements and New insurance accounting. In 2011 Korean solvency system for insurance company moved to US-based solvency system (RBC) from EU-based solvency system;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plans to raise the confidence level of capital requirements to 99 percent in line with global regulatory developments until 2015. Current liability adequacy test is expected to move to the IFRS-based valuation principle around 2018.

However, capital requirements and insurance accounting are being reinforced respectively without comprehensive blue print for their implementation, which makes their implementation uncertain.

In this report, we suggest a road map to the strengthening of an insurer's solvency as follows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influence of new capital requirements and new insurance accounting on the solvency position of an insurer:

1. Preparing for market-based insurance liability valuation and reinforcing the qualitative assessment of solvency system; then,
2. Reinforcing the quantitative assessment of solvency system.

Finally, we suggest that the financial authority eases conditions for issuing bond and revises regulations for reinsurance and derivative products to handle risk management efficiently.

요 약

1. 서론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규제는 단순한 담보금 요구방식에서 회사가 노출된 위험에 대응하여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으며, 점차 보험회사의 전사적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시장은 G20을 중심으로 각국에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요구하고, 공통 회계기준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구함.
 - 회계규제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이 제정되어 각국은 IFRS를 중요한 준거 기준으로 삼고 있음.
 - － 한국은 국내 일반회계기준을 IFRS로 대체하는 전부채택국가에 해당함.
- 국내 금융감독당국도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체계를 EU Solvency I에서 2011년 RBC 체계로 전환한 바 있으며, 국제 지급여력규제의 변화에 따라 RBC 강화가 시행 중이며, 부채적정성평가 강화도 예정된 상황임.
 - 지급여력규제의 경우 준비금과 보험료에 기초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EU Solvency I에서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따라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RBC 제도가 도입되었고, 최근 RBC 강화 작업이 추진 중임.
 - 회계규제의 경우 부채의 시가평가를 요구하는 IFRS 4 phase II가 수년 내에 시행될 것이어서 부채적정성평가가 점차 강화될 예정임.
- 이에 본고는 국내 RBC 강화와 부채적정성평가 강화에 대한 국제적 정합성과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지급여력규제체계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국내 지급여력규제

- 국내 지급여력규제는 2000년 전후와 2011년 전후로 대별되어 변화해왔다고 할 수 있고, 현재 RBC 자기자본규제와 RAAS 경영실태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위험기준 지급여력규제의 틀을 갖추고 있음.
 - 1990년대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는 보험료 규제와 더불어 담보금 또는 보험료/자본 비율 한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 2000년대 지급여력규제는 1999년 EU Solvency I의 도입으로 보험회사 자산운용위험과 보험위험을 반영하는 현행 지급여력제도의 토대가 마련됨.
 - 이후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노출된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동 위험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지급여력규제의 틀을 제시함.

- 현행 RBC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권고한 자본계층화를 적용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보험회사가 노출된 위험을 평가함.
 - 보험회사는 매기마다 자산과 준비금을 평가할 것이 요구되며 노출된 재무 위험 및 비재무위험을 대차대조표에 반영함.

- 현행 RAAS는 보험회사의 경영관리, 보험·금리·투자·유동성 위험, 자본적정성, 수익성 부문에 대해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감독·검사의 수준을 차별화하고, 낮은 등급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적기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함.
 - 현행 RAAS는 실질적으로 계량항목 중심의 모니터링체계로 볼 수 있음.
 - 경영관리, 4개 위험, 자본적정성, 수익성의 7개 부문을 5등급 체계로 평가하여 종합등급을 매기고, 보험회사별 금융시장 영향도에 따라 모니터링 수준을 차별화함.

-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현행 RBC 비율 150% 이상 유지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손실흁수능력에 따른 가용자본 항목의 조정과 요구자본 산출방식을 2015년 초까지 변경하는 내용의 RBC 강화계획을 제시함.
 - 가용자본의 경우 2012년에 합산항목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고 (자본계층화), 손해보험 비상위험준비금의 자본 분류에 따라 해당 이연법인세부채는 2014년까지만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함.
 - 요구자본의 경우 2013년부터 위험계수 산출 신뢰수준을 현행 95%에서 99%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음.
- 한편, RBC 강화계획 이외에도 다양한 규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 결과적으로 현재 보험산업에는 RBC 강화, 부채적정성평가 강화, 표준이율 및 공시이율 관련 보험료 규제 등이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3. 해외 지급여력규제 추세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효율적인 단일 유럽보험시장 구축을 위해서 새로운 보험감독체계(Solvency II)를 구축하고 있음.
- Solvency II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 다른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보험핵심원칙(Insurance Core Principle)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Solvency II를 참조함.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들은 자국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Solvency II를 참조함.
 - 미국 NAIC는 SM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Solvency II를 참조함.

- 미국 감독당국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보험감독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SMI)를 2008년 6월에 시작함.
 - SMI는 보험회사 스스로의 지급능력 평가와 이를 감독당국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미국 RBC 체계는 SMI의 도입으로 EU Solvency II의 Pillar2에 해당하는 정성평가체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3층 구조를 가지게 됨.

- 미국은 정량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성평가의 한 방법으로 ORSA(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를 도입함.
 - ORSA는 보험회사의 전사위험관리체계(ERM)의 한 부분임.
 - 보험회사는 리스크를 내부적으로 적절히 평가하는 것이 목적임.
 - 보험회사는 내부 사업계획, 리스크에 대한 자본의 여력, 회사의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음.

- EU Solvency II와 미국 RBC/SMI의 최종적인 모습은 유사한 모습으로 수렴해 갈 것으로 예상됨.
 - 두 감독체계의 위험구분은 거의 동일함.
 - 동일한 목적의 3층 구조, 즉 정량평가, 정성평가, 그리고 시장규율로 구성되어 있음.
 - 여러 국제적인 논의들을 바탕으로 향후 유럽 Solvency II에 더 가까운 형태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 국가들은 재무건전성 감독체계 개편에 있어서 일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나 나머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호주, 일본, 싱가폴은 적극적으로 재무건전성 감독체계를 변화시키고 있음.
 - 인도네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등은 Wait & See 전략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4. 지급여력규제 강화 영향 평가

- 금리위험과 신용위험의 신뢰수준을 95%에서 99%로 상향 시 6개 생명보험회사와 6개 손해보험회사의 RBC 비율이 권고수준인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RBC 강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회사는 중소형사 그룹으로 나타남.
 - RBC 강화가 중소형사의 자본비용을 늘리게 되고 이에 따라 시장경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부채시가평가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험회사별 책임준비금은 최대 16%까지 증가하여 5개 생명보험회사의 RBC 비율이 150%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할인율의 하락은 보험부채를 증가시키고, 이는 가용자본을 줄여 RBC 비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함.
 - 더욱이 부채시가평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회사들이 주로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매한 중·대형사라는 점에서 생명보험산업에 미치는 부채시가평가의 영향은 매우 큼.
 - 반면,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을 함께 취급하면서 장기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의 비중이 절대적인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부채시가평가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RBC 강화와 부채시가평가가 동시에 시행되면 중·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이 크게 악화됨.
 - 가용자본 감소와 요구자본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여 생명보험사 23개사 중 절반에 가까운 11개사가 RBC 비율 150%에 미달함.
 - 이에 보험회사가 당기순익을 전액 내부유보 하더라도 RBC 150% 회복에는 회사에 따라서 5년 이상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 만약 부채시가평가만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RBC 비율 150% 회복에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임.
- 현재의 수익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RBC 비율 150% 회복에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5. 국내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가. 지급여력규제의 국제적 정합성과 RBC 강화 플랜 평가

- 국내 지급여력규제는 국제적 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의 체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됨.
 - 정량평가는 2009년 EU Solvency I 체계에서 미국식 RBC 체제로 전환하여 요구자본 산출 시 위험을 세분화하고, 2012년 가용자본계충화를 도입하였음.
 - 또한 미국식 RBC 체계를 벤치마크 함과 동시에 Solvency II 체계를 반영함.
 - 한편, 정성평가는 RAAS 제도를 통해 정량평가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운영 리스크를 모니터링함.
 - 따라서 국내 지급여력규제는 위험세분화, 자본계충화, 정성평가 등 국제적 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의 체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고 보험회사 관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리스크 특성을 반영하는 리스크 측정을 보다 정교하게 함으로써 리스크 민감도를 개선해야 함.
 - 장수위험, 대재해위험 등과 같은 새로운 위험들을 리스크 측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사별 특성을 반영하는 정교한 정량평가의 도입이 필요함.
- 보험회사 관점의 위험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12년에 시작하여 2015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현행 국내 지급여력규제 강화계획은 짧은 이행기간, 종합적인 로드맵 부재, 규제 불확실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짧은 이행기간: 3년 만에 지급여력규제 강화 완료 계획
- 관련 규제의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로드맵 부재
 - － 현재 보험산업에는 RBC 강화, 부채적정성평가 강화, 표준이율 및 공시 이율 관련 보험료 규제 등이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규제 불확실성: 기본계획에 없는 제도들이 상황에 따라 추가되어 예측가능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나. 지급여력규제 개선 로드맵

■ 지급여력규제는 관련 규제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종합적인 로드맵 제시가 필요함.

- 지급여력규제는 보험료 규제, 준비금 규제, 자산운용 규제 나아가 예금자보호제도까지 여러 가지 제도들의 영향을 받음.
 - － RBC 규제 강화와 병행하여 IFRS4 phase II 부채시가평가에 대비해 부채적정성평가(LAT)를 강화하고 있으나, 두 규제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면 시행시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지급여력규제 강화의 방향성은 지급여력 유지와 건전한 시장경쟁임.

- 정량평가는 회사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하여 리스크 민감도를 제고해야 함.
- 충분한 논의와 영향평가를 거쳐 종합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규제의 불확실성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정성평가 강화를 통한 보험회사 전사적 위험관리(ERM) 유인 제고가 필요함.
 - 해외사례에 비추어 “정성평가-정량평가” 순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음으로 국내 보험산업에 적용될 국제기준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부채시가평가는 우리나라가 full adoption 국가이기 때문에 IFRS4 phase II가 시행되는 2018년 국내 보험회사에 의무 적용됨.
 - 반면 자본규제는 국제기준이 없으며, EU Solvency II는 2016년 시행될 예정이나 정성평가가 우선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 규제 시행 영향과 국제기준을 고려하면 부채시가평가를 대비한 부채적정성평가 강화가 우선임.
- 영향평가 결과 지급여력규제 강화와 부채적정성평가 강화의 분리 시행이 바람직하며,
 - 부채시가평가에 대한 재량권이 없으므로 시가평가에 대비한 부채적정성평가 강화가 우선 시행되어야 함.
 - 특히 부채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할인율에 대한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여 할인율 기준 강화를 위주로 부채적정성평가를 강화함.
- 지급여력규제 강화는 부채시가평가 일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함.
- 정량규제는 2016년까지 회사별 특성 반영 방안을 마련하고, 2년간의 영향평가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정성평가는 보험회사 관점의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ORSA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함.
 - 아울러 RBC 정교화와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능력 향상을 전제로 2018년부터는 RBC 비율 150% 관행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금융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금융감독당국은 시장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 지급여력규제는 관련규제와의 조화가 필수적임.
 - 따라서, 지급여력규제에 따른 보완 조치로써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상시 발행 허용을 검토하고,
 -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위험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재보험 및 파생상품 규제를 개선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험료 억제 등 가격규제는 재무건전성 규제가 의도한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강화 유인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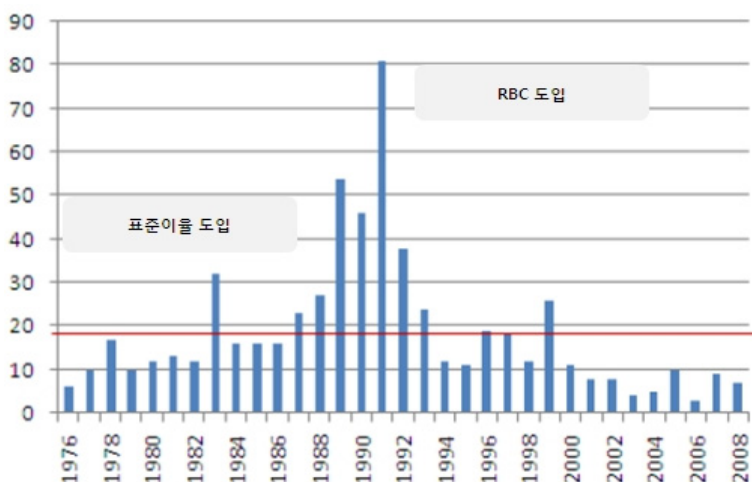
- 보험회사는 시장주도자로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함.
 -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세계시장에서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는 인식이 필요함.
 - 전사적 위험관리(ERM) 강화를 통한 자사에 맞는 자본적정성 확보 등
 - 보험회사는 능동적으로 지급여력을 확보해야 함.
 - 이익의 적극적인 내부유보를 통해 실질적인 자본 확충에 주력해야 함.
 - 부채시가평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대형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점진적으로 자본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음.

I. 서론

1. 연구목적

1970년대 이후 금융위기 역사는 정책당국의 금리인하 대응과 거품에 따른 금리 인상 대응이 반복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보험회사의 부실 경험을 통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능력 유지를 요구하는 지급여력규제 방식도 준비금 이외에 일정 금액을 확실히 모든 보험회사에 요구하는 방식에서 보험회사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손실(위험)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금액(요구자본)을 보험회사가 자본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지급여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왔다.

〈그림 I-1〉 미국의 생명보험회사 파산 추이(1976~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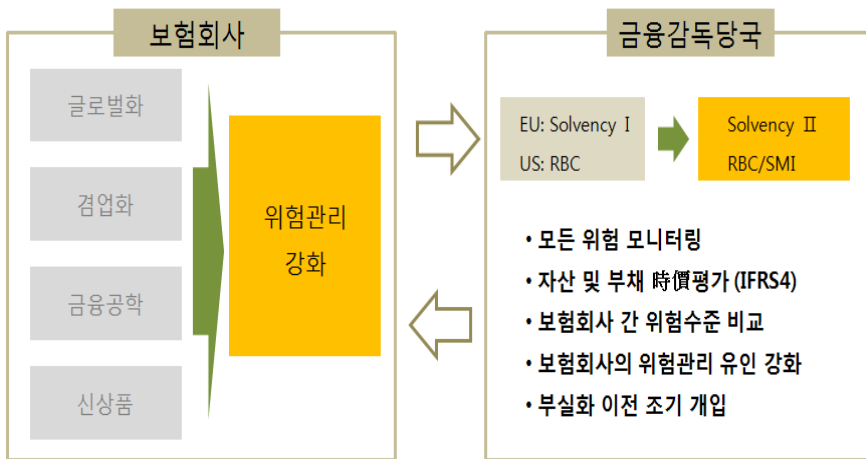


자료: A.M.Best(2009).

미국에서는 금리인상 시기에 보험상품의 가격자유화에 대응한 표준이율제도가 1980년에 도입되었고, 금리인하 시기에는 많은 보험회사가 부실해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위험기준 자본규제(RBC: Risk-based Capital)가 도입되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지급여력규제 개혁 작업을 통해 보험회사의 지배구조와 전사적 위험관리(ERM: Enterprise Risk Management)에 주목하는 정성 평가(qualitative assessment)가 강화되고 있다.¹⁾ 유럽에서도 지역통합을 계기로 공통 규제의 요구가 커지면서 Basel II의 3층 규제 체계(3-pillar system)를 토대로 하여 보험부채(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와 보험회사의 전사적 위험관리를 강조하는 새로운 지급여력규제(Solvency II)가 추진되고 있다.²⁾

이러한 지급여력규제의 변화는 시장경쟁이 다른 금융권역으로(권역 간 장벽 축소) 또는 다른 지역으로(국제화) 확대되면서 전사적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험회사 경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림 I-2〉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강화와 지급여력규제의 국제적 추세



자료: 조재린 외(2013), p. 17.

1) 미국의 지급여력규제 개혁(SMI: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에 대해서는 김해식·조재린(2012) 참조.

2) 장동식(2009), 오창수(2012) 참조.

한편,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는 세계 각국의 보험감독에 공통으로 적용될 원칙 내지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가 2011년에 새롭게 제시한 보험핵심준칙(ICP: Insurance Core Principles)이 각국 보험감독의 준거 기준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금융위기 이후 G20이 각국 금융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을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에 관한 국제 기준의 영향력은 그동안 나라별 지역별로 진행되던 기존의 규제 변화와 비교하여 그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변화는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새로운 회계규제의 등장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과 ICP 모두 현재와 같은 준비금의 원가 유지 관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험부채 평가에 관한 국제회계기준(IFRS 4 phase 2)과 IAIS의 ICP 14(자산과 부채의 평가) 모두 보험회사가 보험부채를 시가(時價)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더구나 IFRS를 전면 수용(full adoption)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가 IFRS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시장에 공시해야 하므로 IFRS 4 phase II의 보험부채 시가평가는 단순히 국제적 정합성 제고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적용해야만 하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ICP 14보다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하겠다.

지급여력규제의 국제적인 변화는 이미 국내 보험감독에도 반영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는 2011년 준비금과 보험료에 기초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EU Solvency I 방식에서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따라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RBC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2012년부터는 RBC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RBC 강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회계규제에서도 IFRS 4 phase II 시행에 대비하여 현행 부채적정성평가 기준이 시가평가에 준하는 형태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보험산업이 RBC 강화와 보험부채 시가평가라는 두 개의 파고를 동시에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재무 측면에서 충분한 자원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보험부채와 자본 각각에 대한 규제 강화는 준비되고 있으나, 정작 보험회사 지급여력 강화에 관한 전반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들 규제의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본고는 국내 지급여력규제에 대한 국제적 정합성과 최근 추진되고 있는 RBC 강화 계획 등이 보험시장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보험회사 지급여력 강화에 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특히 보험금 지급능력 유지는 좁게는 예상 손실에 대응한 준비금의 적정 적립과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한 자본의 적정 보유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러나 지급여력 유지를 넓게 보면 준비금과 자본은 물론 보험료의 적정성과 운용자산의 건전성, 그리고 예금자보험제도와의 관련이 있다.

〈그림 I-3〉 보험회사 지급여력 관련 규제



자료: 조재린 외(2013), p. 31.

이들 지급여력 관련 규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보험회사 지급여력 규제 강화 추세는 보험료나 자산운용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경로를 거치는 데 대해 준비금이나 자본 관련 규제는 보완되거나 강화되는 경로를 밟아왔다.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부실 보험회사의 자연스런 퇴출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사전에 기금을 적립해놓는 예금자보호제도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간 상호 연관성은 현행 지급여력규제 체계에 대한 국내 금융감독당국의 고민에도 드러나고 있다(문재익 2007). 문재익(2007)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규제 강화와 관련하여 표준 책임준비금, 부채적정성평가, 자본규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한편, 세계 여러 나라의 지급여력규제 강화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지급여력규제를 통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위험에 보험회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여 위험관리 유인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보험금지급능력을 유지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보다 많은 위험을 계량화하여 지급여력규제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미국이나 유럽의 지급여력규제 개선 작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내 보험감독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내 지급여력규제가 EU Solvency I 방식보다 위험을 세분화 한 RBC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금리위험을 회피하고자 장기자산 수요를 크게 늘리는 보험회사의 행태 변화가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Solvency I과 비교하여 RBC에서는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 간 부(-)의 듀레이션 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CGFS(2011) 등은 이러한 지급여력규제의 강화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줄어 기관투자자로서 보험회사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는 유럽 Solvency II가 제시한 Pillar 1의 정량평가(quantitative assessment)방식이 보험업의 특성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Campbell(2012)과 Vaughan(2009)은 유럽의 보험감독과 미국 보험감독 간에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위험평가척도, 신뢰수준, 위험평가기간 등에서 유럽 Solvency II의 Pillar 1과 미국 RBC의 요구자본 산출방식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은 지급여

력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개혁 작업에서 기존의 자국 RBC 틀을 유지한 채 정성평가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Brahini(2012)은 아시아 각국이 자국 지급여력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관하여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김해식·조재린(2013)은 RBC 정량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인 논의가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나라 역시 RBC 강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급여력규제 전반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연구범위와 방법

문헌 연구를 통하여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현황과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RBC 강화 계획, 그리고 지급여력규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향후 지급여력규제 청사진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RBC 강화 계획과 보험부채 시가평가가 보험회사 RBC 비율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규제 간 시행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Ⅱ장은 현행 국내 지급여력규제를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지급여력을 평가하는 위험기준자본규제(RBC)와 경영실태평가(RAAS)로 대별하여 살펴보고, 또한 지급여력평가와 관련된 부채의 주기적 평가(부채적정성평가 및 시가평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Ⅲ장은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와 관련하여 유럽과 미국의 규제 체계를 비교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제Ⅳ장은 금융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RBC 강화계획과 IFRS 4 phase II 시행이 국내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RBC 강화계획의 영향은 보험회사의 RBC 비율에 가장 영향이 큰 금리위험과 신용위험의 신뢰수준 상향 조정에 따른 보험회사의 RBC 비율의 변화를 분석하고, IFRS 4 phase II 시행에 따른 영향은 준비금 평가

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자산운용수익률보다 낮은 무위험 수익률을 적용하여 보험 회사 RBC 비율의 변화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 V 장은 지금까지의 논의와 분석을 토대로 현행 지급여력규제의 국제적 정합성과 향후 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시장의 수용능력을 평가하여 지급여력규제의 개선 로드맵을 제안한다.

Ⅱ. 국내 지급여력규제 현황

1. 보험회사 지급여력의 개념과 현안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여부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본(가용자본)과 보험회사가 노출된 위험(요구자본)을 비교한 지급여력비율(RBC 비율)로 평가된다. 즉, 가용자본이 요구자본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RBC 비율 $\geq 100\%$) 보험회사가 지급여력이 있다고 평가된다. 이때, 보험회사의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이므로 금융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보험회사의 가용자본 규모가 달라지고,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위험에 노출된 규모도 달라진다. 또한 가용자본의 양뿐만 아니라 가용자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보험회사의 실질적인 위험 대응 능력도 달라지므로 자본의 질(계층)이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2012년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을 구성하는 자본항목을 위험대응 능력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는 자본계층화를 추진하였고,³⁾ 위험대응능력(즉 예상치 못한 손실의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후순위채권 등 보완자본에 대해서는 기본자본에서 차감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규모까지만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3) 가용자본 산출항목은 [부록 I] 참조.

- 가용자본 = 합산항목 - (차감항목 + 자회사 자본부족금액)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차감항목 + 자회사 자본부족금액)
- 보완자본 ≤ (기본자본 - 차감항목) * 100%

한편, 현재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보험부채의 평가는 상품설계 시의 기초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원가방식이고, 지급여력평가에서도 보험부채가 평가 당시의 기초율로 갱신되어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부채의 크기로 인하여 가용자본이 과대평가되거나 요구자본 산출에서 보험부채의 위험노출 규모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IFRS 4 phase 2와 EU Solvency II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가 적용될 경우, 보험부채가 지금보다 늘어나서 가용자본이 줄어들거나, 위험계수의 상향과는 별개로 보험부채라는 노출규모의 증가로 요구자본이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RBC 위험계수의 상향이나 보험부채의 시가평가 시행 시 현재의 RBC 비율이 유지되려면, 보험회사는 이익의 내부유보 확대나 자본 증자를 통해 보유 자본량을 늘려나가거나 노출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금융감독당국이 2012년에 RBC 3개년 강화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상당수 보험회사가 자본 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만기보유채권의 계정재분류⁴⁾를 통해 가용자본을 늘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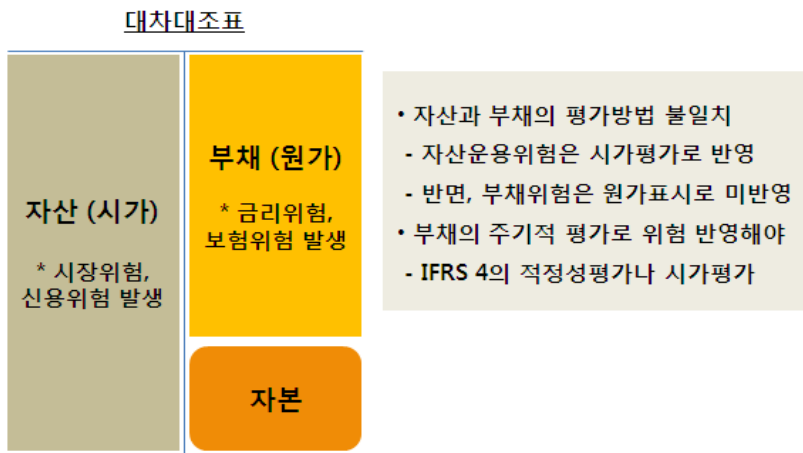
한편, IFRS 4 phase 2 제2차 초안이 공개되면서 보험부채 시가평가가 201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현행 부채적정성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방법론도 지금보다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⁵⁾ 다만, 현행 체제

4) 일부 보험회사는 금리인하 시기에 채권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이용해 원가로 표시하는 만기보유채권을 시가평가 대상인 중도매각가능채권으로 재분류하여 회계상 자본을 늘려 RBC 비율을 높여 왔다. 그러나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채권 평가액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RBC 비율이 하락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5) 현행 IFRS4 phase 1은 매기마다 준비금의 부족만을 반영하는 적정성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적용될 IFRS 4 phase 2는 현행 부채적정성평가보다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시가(時價)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에서는 부채적정성평가에 따른 준비금의 증가가 바로 RBC 비율의 가용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있다. 따라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가 아직까지는 지급여력평가와 관련이 없고 IFRS(일반회계)만의 현안에 머물러 있기는 하다.⁶⁾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이 그동안 지급여력평가에 IFRS를 기본 정보로 사용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기에 향후에도 보험부채 시가평가가 IFRS만의 현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림 II-1〉 자산과 부채의 평가와 위험기준 지급여력규제



자료: 문재익(2007), p. 37. 수정 인용.

2. 지급여력에 대한 정량평가

현재 RBC는 보험회사가 노출된 위험을 크게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5가지 위험으로 구분한다. 금리위험, 신용위험, 시장위험이 재무위험에 해당한다면, 보험위험과 운영위험은 비재무위험에 해당한다. 한편, 보험, 금리, 신용, 시장위험이 계량적(정량적) 방식으로 측정되는 반면, 운영위험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와

6)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준비금을 초과하는 금액과 더불어 부채적정성평가로 추가 적립된 준비금 역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RBC 비율 산출 시 부채적정성평가에 따른 준비금 추가 적립이 가용자본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위험관리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정량적 방식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운영위험은 일반적으로 매출이나 자산을 대리변수로 하여 측정되고 있으며, 현행 RBC에서는 보험료가 대리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 RBC 규제의 특징은 보수적인 RBC 비율 유지를 보험회사에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감독규정에서는 RBC 비율 100% 이상이면 보험회사가 지급여력이 있다고 해석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이보다 1.5배 높은 수준인 RBC 비율 150% 이상 유지를 보험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RBC 비율 150% 유지가 요구되면서 지급여력감독의 관행으로 자리 잡았으며, 사실상 RBC 규제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⁷⁾

그런데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95% 신뢰수준에서 산출되고 있는 현행 RBC 요구자본을 향후 99% 신뢰수준에서 산출하는 것을 포함한 RBC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생명보험의 보험위험에 대해서는 2013년에 이미 99% 신뢰수준 상향을 적용한 바 있다. 더구나 99% 신뢰수준 상향이 RBC 비율 150% 요구 관행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향후 모든 보험회사는 지금보다 높아진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새롭게 산출된 RBC 비율 역시 1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사실상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최저 RBC 비율은 현행 감독규정에서 정한 수준보다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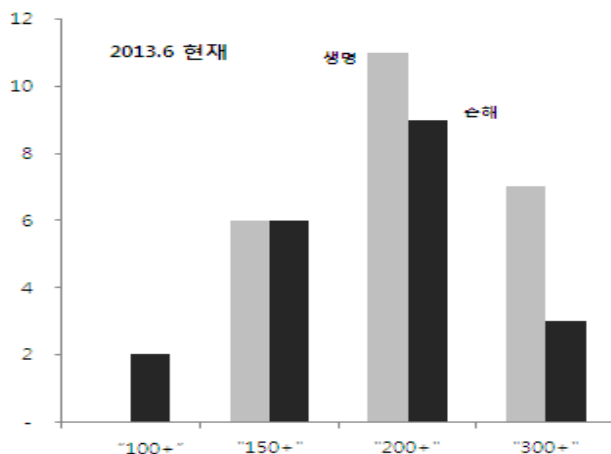
- RBC 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 요구자본 = $[\text{보험}^2 + (\text{금리} + \text{신용})^2 + \text{시장}]^{1/2} + \text{운영위험}$

물론,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RBC 계획에는 강화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완화 요소도 있다. 현행 RBC는 보험회사가 노출된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위험 간

7) 현행 RBC 비율 150%의 감독규정 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보험업감독규정 제2-6조의 3(보험종목 추가 허가에 관한 심사기준) 제1항, 제7-10조(후순위채무) 제4항의 RBC 비율 150% 이상 요구에서 추론해 볼 수도 있으나, 매우 제한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행 관행의 근거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상관관계를 “있다(1)와 없다(0)”로만 구분한다. 보험회사의 금리위험(자산과 부채 간 만기구조 불일치에 따른 손실 가능성)과 신용위험은 상관관계가 있고, 나머지 위험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한다. 이는 미국 RBC 산출체계와 유사한 보수적인 접근방식이다. 반면 EU Solvency II는 보다 정교하게 위험 간 상관관계를 반영한다.⁸⁾ 이번 금융감독당국의 RBC 계획에도 위험 간 상관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한다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⁹⁾ 2013년 6월 현재, 모든 보험회사는 감독규정 상 최저 RBC 비율인 100%를 초과하고 있고, 대다수 보험회사는 금융감독당국의 권고수준인 RBC 비율 1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보험산업의 평균 RBC 비율은 2013년 6월 현재 생명보험 277.7%, 손해보험 264.3%로 지급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II-2〉 국내 보험회사의 RBC 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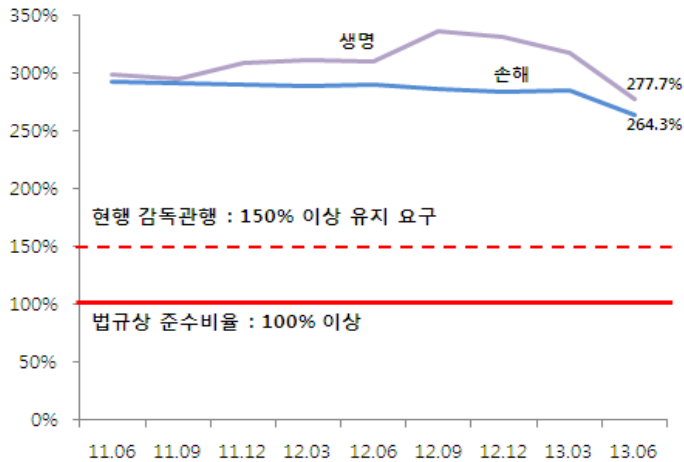


주: 손해보험회사 중 재보험사와 일반손해보험에 특화된 외국계 보험회사는 제외함.
자료: 금융통계시스템.

8) 장동식(2009), 오창수(2011) 참조.

9) 허창언(2011).

〈그림 II-3〉 국내 보험산업의 RBC 비율 추이



3. 지급여력규제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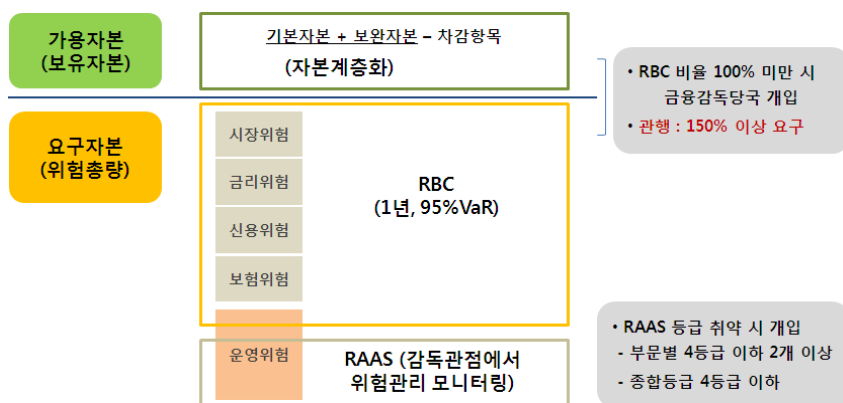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의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90년대에는 모든 보험회사에 획일적인 금액을 담보금으로 요구하거나, ‘보험료/자본’ 비율 한도를 적용하여 매출 증가에 따라 보다 많은 자본을 요구하는 초기 형태의 지급여력규제가 이루어졌다.¹⁰⁾ 지급여력규제가 단순하게 운용된 데에는 금융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보험료와 자산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에 더 많이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 보험료와 투자에 대한 직접규제는 줄고, 보험회사의 준비금과 지급여력(자본)을 규제하고 재무상태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간접규제가 강화되었다. 이 시기에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과 보험언더라이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따라 요구자본이 산출되는 EU 방식의 지급여력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10) 보험연구소(2001), pp. 86-93.

또한 보험회사 재무상태에 대한 상시감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은행에 적용되던 재무지표 중심의 경영실태평가제도(CAMEL)¹¹⁾가 보험회사에도 도입되었다. EU식 지급여력규제가 보험회사가 노출된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라면, 경영실태평가제도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이외에 자산 건전성, 경영 효율성, 유동성 부문에 대한 분기별 정량평가와 보험회사 경영관리에 관한 정성평가를 통해 보험회사를 상시감시(모니터링)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관리의 경우 상시감시보다는 현장검사에 주로 의존하였으므로 이 당시 경영실태평가는 EU 방식 지급여력비율과 재무지표에 의존한 분기별 정량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4〉 위험기준 지급여력규제 : RBC와 RAAS



자료: 조재린 외(2013), p. 21.

2000년대 후반에 금융감독당국의 지급여력규제는 보험회사의 위험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제도로 전환하였다. 기존의 EU 방식보다 다양한 위험을 반영하는 RBC 제도가 2009년에 도입되고, 상시감시에서는 전통적인 재무지표 대신에 위험지표가 중심이 된 새로운 경영실태평가(RAAS: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제도가 2007년에 도입되었다. 2010년대 들어와서 이들 제도는 기존 제도와 병행되는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11년에는 RBC가 EU식 지급여력규제를 대체하

11) CAMEL은 Capital Adequacy, Asset Quality, Management, Efficiency, Liquidity의 약자, RAAS는 Risk Assessment Application System의 약자임.

였고, 2012년에는 RAAS가 CAMEL을 흡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RAAS 전체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이거나¹²⁾ RBC 비율이 100%에 미달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에 자본 확충 등 경영개선조치를 요구하거나 경영에 직접 개입하게 되며, 현장검사 주기도 단축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회사 지급여력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는 RBC와 같은 정량평가 이외에 보험회사 위험관리에 대한 정성평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IAIS는 2011년 개정된 ICP16을 통해서 보험회사가 스스로 위험 및 자본을 평가하고 그 관리 절차를 문서화하여 금융감독당국과 소통하는 정성평가방식(ORSA: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을 제안하고 있다.

ORSA와 비교해 보면, 국내 RAAS 제도는 여전히 정량평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RAAS 제도는 비계량 평가항목을 보다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등 보험회사별 영업 특성과 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정량평가와 등급평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RBC 비율과 같은 정량 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부실은 정성 측면에서 비롯된다는 금융위기의 경험이 보험회사 모니터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RBC의 분기평가와 RBC 비율 150% 이상 요구를 유지하는 관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금융감독당국의 RBC 강화 계획

금융감독당국은 저금리 대응력 강화와 지급여력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목표로 2015년까지 가용자본의 질을 높이고 요구자본 산출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강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동 계획과 별개로 RBC 비율 150% 요구 관행은 그대로 유지한다.

12) RAAS 종합등급이 3등급 이상이더라도 (1) RBC 비율에 따라 평가된 자본적정성(RBC)등급이 4등급 이하이거나 (2) 2개 부문 이상에서 부문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일 경우에도 감독당국의 경영개선권이나 개선조치가 이루어진다. 금융감독원(2012b), pp. 2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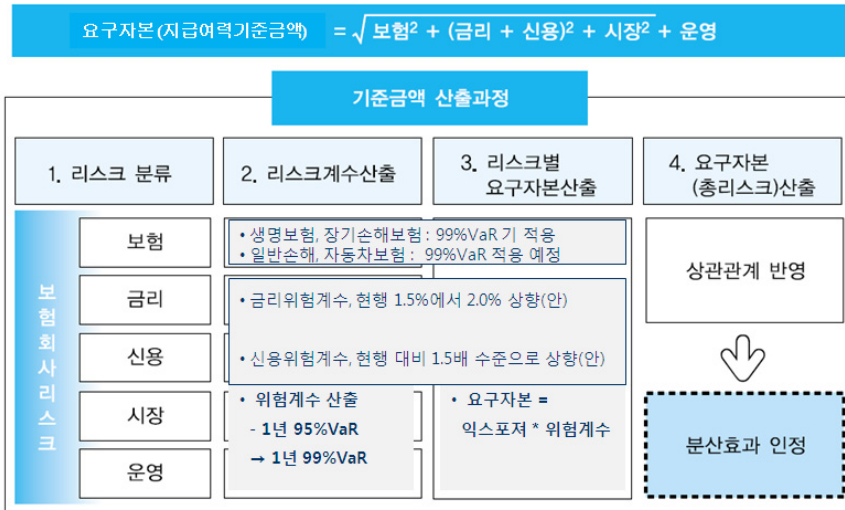
〈표 II-1〉 금융감독당국의 RBC 강화 계획(2012~2015)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1. 모든 보험회사에 RBC 비율 150% 이상 유지권고 (실질적 신뢰수준 상향 효과)					
〈가용자본〉					
2. 자본계층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					
3. 비상위험준비금 이연법인세부채: 가용자본에서 제외					
〈요구자본〉					
4. 변액보험 보증위험액 산출 개선					
5. 위험계수 신뢰수준 상향					
• 보험위험(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 보험위험(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 금리역마진위험					
• 금리위험					
• 신용위험					
6. 위험상관계수 세분화					
7. 연결RBC제도					

자료: 허창언(2012) 등을 참고하여 작성함.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가용자본의 경우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가용자본 항목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계층화하고(2012년), 손해보험회사의 부채항목이었던 비상위험준비금은 2011년부터 자본으로 재분류되면서 여기서 발생한 이연법인세 부채는 2014년까지만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요구자본의 경우 신뢰수준 상향(일반보험의 보험, 금리, 신용위험의 위험계수에 적용되는 신뢰수준을 95%에서 99%로 변경),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위험 산출방식 변경, 금리역마진위험(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할 이자를 보험계약자계정의 투자수익은 물론 자본계정의 투자수익으로도 보전하지 못할 가능성)의 신설, 연결RBC제도와 위험 간 분산 효과, 즉 상관관계를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림 II-5〉 요구자본 산출과 RBC 강화 계획



자료: 허창언(2012), p. 9, 수정 인용함.

그러나 RBC 강화 계획은 두 가지 측면, 즉 지급여력규제에 관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의 측면과 다른 규제와의 조율이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RBC 강화 계획은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IAIS의 ICP를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량평가 강화 방안만을 내놓고 있으며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더구나 정량평가의 경우에도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의 지급여력규제와 비교하여 국내 RBC 정량평가가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수준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둘째, 보험회계규제나 보험료 규제 등 다른 규제와의 조율은 향후 RBC 규제의 이행 여건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고려 요소이다. 그러나 RBC 강화 계획이 이행 여건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신계약비 규제가 강화되고, 은행에 적용된 매도가능증권의 손상평가회계가 보험에도 확대 적용되는 등 새로운 규제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상황이다.

〈표 II-2〉 금융감독당국의 RBC 강화 계획 이외의 규제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8. 표준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 억제					
9. 공시이율 산출식의 보험회사 재량권 축소					
10. 신계약비 인정한도 축소					
- 신계약비의 이연대상 축소					
- 신계약비의 이연한도 축소					
11. 매도가능증권 손상평가					
12. 부채적정성평가 강화					
13. 금리연동형상품의 금리위험계수 산출방식 조정					
14. 대출위험계수(담보, 소매대출) 상향 등					
15. 신종자본증권 자산의 신용위험계수 상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RBC 강화 계획에는 보험료를 통한 직접 규제와 자본을 통한 간접 규제 간 조율이 보이지 않고, 준비금 관련 회계규제 등 다른 규제의 변화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보험회사의 규제 부담은 RBC 강화만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부담에 비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RBC 강화 계획의 이행 시기가 당초보다 지연될 수 있고 규제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규제 효율성을 높이려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의 위험 민감도 제고와 더불어 규제부담도 고려해야 하며, 그 규제부담은 지급여력규제 자체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규제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종합적인 청사진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Ⅲ. 해외 지급여력규제 추세

1. EU Solvency II

가. 배경

2000년대에 들어와 금융공학을 활용한 금융상품이 보편화되고, 글로벌화 및 겸업화 전략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가 보험회사의 주요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만큼 보험회사가 노출되는 위험도 복잡하고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 경영에서는 위험을 전사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유인이 커지고 있고, 금융감독당국도 단순한 지표를 활용해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보험회사 부실에 조기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EU Solvency II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역내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감독 원칙을 제시해야만 하는 필요성도 있지만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힘든 현행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EU Solvency I)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 EU Solvency II 특징 〉

- 원칙중심 감독
- 보험회사가 노출된 모든 위험을 반영
-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시가평가
- 전사적 위험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체계 도입

1970년대에 제안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EU Solvency I은 보험료와 준비금이라는 두 가지 지표만을 활용해서 보험회사가 노출된 위험 총량을 개략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서 예상되는 손실이 충분히 반영된 회계정보가 활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보험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지급여력평가라고 보기도 힘들다. 이에 따라 Solvency II는 보다 다양한 위험을 정교한 방식으로 평가할 것과 평가 시점에서 예상되는 손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Solvency I의 문제점은 유럽의 지급여력감독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여러 나라에서 지급여력규제의 모범으로 여겨져 온 미국 RBC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유사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현행 Solvency I의 대안으로 EU가 제시한 Solvency II의 개혁적 내용들은 IAIS가 보험핵심원칙을 개정하는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나라가 Solvency II를 자국의 지급여력규제 개선의 모델로 삼고 있다.

나. 특징

EU Solvency II의 목적은 보험계약에 내재된 위험에 민감하도록 지급여력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 Solvency II는 은행업의 Basel II에서 제시된 정량평가, 정성평가, 시장규율의 3층 구조(3 Pillar) 체계를 보험업에도 채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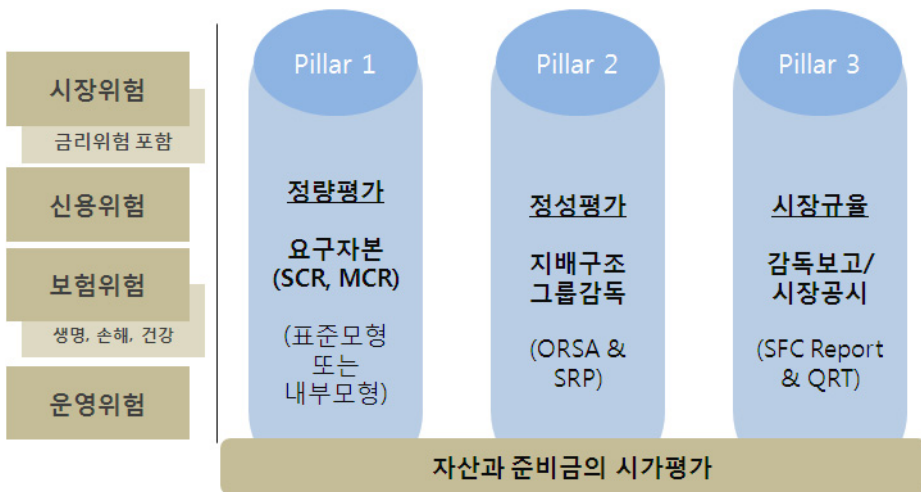
우선 EU Solvency II의 정량평가(Pillar 1)는 가용자본을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산출하고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정도(가용성, 영구성, 후순위성 등)에 따라 자본의 질을 차별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EU Solvency II는 요구자본(Solvency Capital Requirement)이 위험에 민감하게 산출되도록 위험을 세분하고 기존의 위험계수방식보다는 시나리오방식이 보다 보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EU Solvency II의 정성평가(Pillar 2)는 보험회사가 위험관리에 대한 적절

한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자사의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를 평가하여 그 과정을 문서화하고, 금융감독당국은 그 문서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유지를 모니터링 하는 ORSA 시행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시장규율(Pillar 3)은 보험회사가 지급여력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도록 하여 시장의 이해관계자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존보다 많은 위험관련 정보 공시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보험회사에 상당한 정보공시 부담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Ⅲ-1〉 EU Solvency II의 구성 체계



2. 미국 RBC/SMI

가. 배경

미국 RBC의 정량평가는 위험계수방식을 이용한 요구자본 산출체계로 1990년대에 도입되었다. EU Solvency II와 다르게 미국 RBC는 오랜 경험을 거치면서 위험이 추가되고 그에 맞는 방법론이 채택되는 형태로 진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RBC에서는 위험마다 위험기간, 신뢰수준, 위험척도가 통일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난다. 2000년대에 금리위험, 주식에 대한 시장위험 등이 포함되었고, 변액보험 등에 대해서는 위험계수 대신 시나리오 방식으로 위험량을 측정하는 등 EU Solvency II에서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변화가 미국 RBC에서도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RBC는 기본적으로 위험계수방식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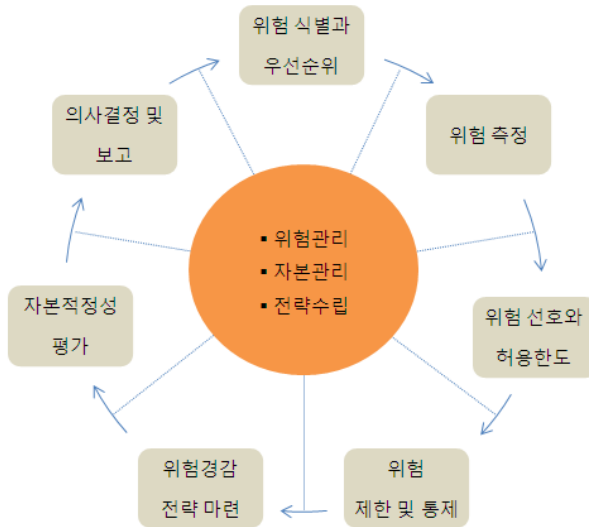
한편, 금융위기 직후 미국 보험감독에 대한 국제적 기준 수용에 대한 압력이 커지면서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ICP 논의와 국제회계기준의 발전을 반영하여 지급여력규제 현대화작업(SMI: Solvency Modernization Initiative)을 추진하여 RBC 정량평가 개선, 정성평가 ORSA 도입, 준비금 평가와 관련된 감독회계 정비, 담보를 요구해 온 재보험규제의 개선, 그룹감독의 5개 분야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RBC가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흐름에 대응하고 있는 분야가 ORSA로 대표되는 정성평가부문이다.

- RBC 요구자본 : ICP 17 (자본적정성)
- ORSA : ICP 16 (감독목적 ERM)
- 그룹감독 : ICP 23-26 (그룹감독 관련 기준)
- 감독회계 : ICP 14 (자산과 부채의 평가)
- 재보험 : ICP 13 (재보험 및 위험전가)

나. 정성평가 ORSA의 도입

미국 SMI는 RBC 정량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ORSA를 2015년부터 시행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¹³⁾ IAIS의 ICP는 보험회사가 자사의 위험관리와 현재 및 장래 지급여력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¹⁴⁾ 이에 따라 NAIC는 최소 1년마다 ORSA를 실시할 것을 보험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그림 Ⅲ-2〉 ORSA 절차



ORSA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절차이며 동시에 감독당국의 요건이기도 하다. ORSA는 위험을 식별, 측정하여 그 허용한도와 경감방안을 마련하고 가용자본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경영의사결정을 내리는 일련의 절차이다. 다른 한편으로, ORSA는 보험회사가 자사의 ORSA 절차가 효과적임을 제3자에게 입증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13) 유럽을 제외하면 미국 이외에도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이 ORSA 시행요건을 마련하고 있다.

14) ICP16 문단 16.11.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는 감독당국의 요건이다. 이를 위해 NAIC는 ORSA 매뉴얼(ORSA Guidance Manual)을 보험회사에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ORSA 절차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내부의 의사결정단계(지배구조)를 거쳐야 하고, 그 문서의 주요 내용(ORSA Summary Report)을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에 제출되는 ORSA 보고서는 크게 보험회사 위험관리 체계에 대한 기술(Section 1), 보험회사가 노출된 위험에 대한 정량 및 정성 평가(Section 2), 위험 총량과 이에 상응하는 가용자본의 적정성 평가(Section 3)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또한 감독당국에 보고되지 않은 ORSA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당국의 현장검사에서 검토될 것이다.

다. Solvency II와 RBC/SMI 비교

우선 유럽의 Solvency II는 원칙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미국 RBC는 규정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정량평가 측정이나 보험회사 내부모형의 인정에서 크게 대비된다. 유럽 Solvency II는 모든 위험에 대해 신뢰구간 99.5%에 위험기간 1년이라는 공통 기준을 적용하고 내부모형 활용을 권장하지만, 미국 RBC는 신뢰구간이나 위험기간이 위험마다 다르고 내부모형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표 III-1〉 유럽 Solvency II와 미국 RBC의 비교

	EU Solvency II	미국 RBC/SMI
요구자본 산출	• 원칙중심 • 하향식(Top-down) • Value-at-Risk (VaR) • 99.5% percentile	• 규정중심 • 상향식(Bottom-up) • 다양한 위험척도(VaR, CTE 등) • 90th~95th percentile
위험기간 (time horizon)	• 1년	• 위험에 적절한 기간 설정
위험관리능력 평가	• ORSA	• ORSA
보고 및 공시	• 연간보고(SFC Report) • 분기보고(QRT)	• 감독보고 • RBC

자료: 김해식 · 조재린(2013), p. 15.

그러나 EU Solvency II와 미국 RBC/SMI의 최종적인 모습은 유사한 모습으로 수렴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두 감독체계 모두 3층 구조의 틀을 가지고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평가하며 정성평가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 ORSA가 정착된 환경에서 보험회사 내부모형이 RBC 표준모형을 대체하는 데에 큰 장애는 없을 것이며, 그만큼 두 체제 간 정량평가의 차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유럽과 미국이 상대 체제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자국의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IAIS ICP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형태로 재정립될 것이다.

3.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

아시아 국가들은 지급여력 감독체계 개편에 있어서 일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나 나머지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지급여력 감독체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국가로는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을 들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등은 다른 나라의 변화를 지켜보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표 III-2〉 RBC 도입 시기

국가	인도네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시기	2000년	2002년	2009년	2011년

자료: Brahini(2012).

호주는 약 3년 동안의 검토기간 끝에 2013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 세계 최초의 원칙중심(principle-based) 지급여력 감독체계인 LAGIC(Life and General Insurance Capital Standards) 체계를 도입하였다. 호주는 보험산업에 있어서 유럽과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지급여력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는 1997년 미국 RBC 체제를 도입하였고, 2012년 정량평가의 신

회수준을 90%에서 95%로 상향 조정하였다. 일본은 유럽계 재보험사들과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짐으로써 Solvency II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2004년 RBC1을 채택하였고, 2012년 RBC2 시행안을 공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제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이는 아시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싱가포르의 국가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또한 RBC2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조되고 있는 금융부문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 2013년 IMF의 금융부문평가(FSAP) 직전인 2012년에 새로운 RBC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RBC2를 2014년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했으나 다양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어 실제 시행은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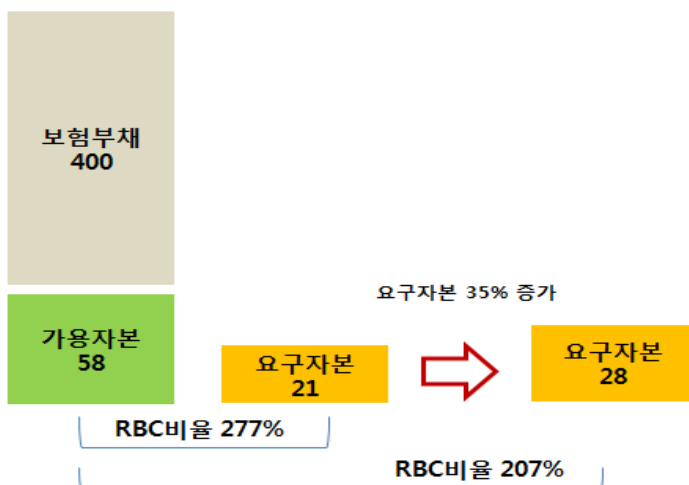
IV. 지급여력규제 강화 영향 평가

1. RBC 강화 영향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RBC 강화 계획의 주된 내용은 금리위험과 신용위험의 신뢰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이는 것이다. 신뢰수준이 높아지면 해당 위험의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위험계수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RBC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이 증가하여 RBC 비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text{RBC 비율} = \text{가용자본} / \text{요구자본}$$

〈그림 IV-1〉 신뢰수준 상향 조정에 따른 영향



자료: 조재린 외(2013), p. 26.

예를 들어, <그림 IV-1>과 같이 신뢰수준 상향으로 요구자본이 35% 증가하는 경우, 요구자본이 21에서 $28(=21 \times 1.35)$ 로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RBC 비율은 $277(=58/21)$ 에서 $207(=58/28)$ 로 하락하게 된다.¹⁵⁾

물론 신뢰수준 상향 조정 이외에도 위험상관계수 정교화, 위험계수 조정, 새로운 위험요소의 추가 등이 RBC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위험상관계수 정교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향후 위험계수의 변화를 가정하기에도 무리가 있으며, 장수위험 등 새로운 위험이 요구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RBC 강화가 보험회사의 RBC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금리위험과 신용위험의 신뢰수준 상향만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신뢰수준의 상향이 요구자본에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현행 RBC 규제는 개별 위험의 노출규모(자산, 부채, 준비금, 보험료 등)에 해당 위험계수를 곱하여 개별 위험의 위험액(요구자본)을 산출하므로 위험계수의 증가는 그 증가율만큼 개별 위험의 요구자본 증가로 이어진다.

$$\text{개별 위험의 요구자본} = \text{노출규모} \times \text{위험계수}$$

한편, 손실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신뢰수준이 95%에서 99%로 상향되는 경우, $\Phi(1.645)=0.95$ 이고 $\Phi(2.326)=0.99$ 이므로 위험계수는 $1.414(=2.326/1.645)$ 배로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Φ 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금리위험과 신용위험의 신뢰수준이 95%에서 99%로 강화된다는 것은 금리위험에 해당하는 요구자본과 신용위험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이 현재의 1.414배로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금리위험 요구자본과 신용위험 요구자본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RBC 요구자본 산출식을 통해 총 요구자본을 증가시키며, 그 증가율은 개별 위험의

15) <그림 IV-1>은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부채, 가용자본, 요구자본의 비율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으며, RBC 강화 시 대다수 생명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이 30~40% 증가하므로 35% 증가를 예시하였다.

요구자본 구성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text{총요구자본} = [\text{보험}^2 + (\text{금리} + \text{신용})^2 + \text{시장}^2]^{1/2} + \text{운영위험}$$

예를 들어, 신뢰수준 상향 조정 이전의 개별 위험의 요구자본이 <표 IV-1>과 같은 경우, 금리위험과 신용위험의 신뢰수준 상향(강화 후)으로 금리위험 요구자본과 신용위험 요구자본이 각각 35.4(=25×1.414)와 56.6(=40×1.414)으로 증가하고, 이는 총요구자본이 38%(=96.7/70-1)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표 IV-1> 신뢰수준 상향 조정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예시)

구분	보험 위험	금리 위험	신용 위험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총요구 자본 ¹⁶⁾
강화 전	10.0	25.0	40.0	6.0	4.0	70.0
강화 후	10.0	35.4	56.6	6.0	4.0	96.7

주: 개별 위험의 요구자본은 생명보험회사 전체 요구자본 분포를 반영함.

다음으로 금리위험과 신용위험의 신뢰수준 상향이 개별 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을 어느 정도 증가시키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현재 개별 보험회사의 개별 위험의 요구자본 중 금리위험 요구자본과 신용위험 요구자본이 각각 1.414배로 커질 때 요구자본의 증가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23개 생명보험회사 중 19개 회사의 요구자본이 30% 이상 증가하고, 11개 손해보험회사 중 7개 회사의 요구자본이 2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신뢰수준 상향 조정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율(생명보험)

요구자본증가율	20% 미만	20~30%	30% 이상	합계
회사 수	2	2	19	23

16) $\sqrt{10^2 + (25 + 40)^2 + 6^2} + 4 = 70$, $\sqrt{10^2 + (35.4 + 56.6)^2 + 6^2} + 4 = 96.7$

〈표 IV-3〉 신뢰수준 상향 조정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율(손해보험)

요구자본증가율	10% 미만	10~20%	20% 이상	합계
회사 수	2	2	7	11

대다수 생명보험회사의 요구자본이 30% 이상 증가한 것은 생명보험 상품이 장기계약이어서 금리위험과 신용위험 요구자본이 크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회사의 요구자본 증가율이 높은 것도 장기보험 취급에 따른 것이다. 반면 금리위험과 신용위험 요구자본이 크지 않은 자동차보험전업사 등 단종 손해보험회사의 요구자본 증가율은 10% 미만이었다.

〈표 IV-4〉 RBC 비율별 생명보험회사 수 : RBC 제도 강화 전과 후

RBC 비율	150 미만	150~200	200 이상	합계
강화 전	0	4	19	23
강화 후	6	4	13	23

〈표 IV-5〉 RBC 비율별 손해보험회사 수 : RBC 제도 강화 전과 후

RBC 비율	150 미만	150~200	200 이상	합계
강화 전	2	5	4	11
강화 후	6	3	2	11

RBC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RBC 비율은 하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RBC 비율 200% 이상인 회사는 19개사에서 13개사로 감소하는 반면, 150% 미만인 회사는 0개사에서 6개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도 200% 이상인 회사는 4개사에서 2개사로 감소하는 반면, 150% 미만인 회사는 2개사에서 6개사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신뢰수준이 상향으로 RBC 비율이 15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 보험회사의 대다수가 중소형 보험회사라는 점이다. 대형 보험회사는 요구

자본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본이 많아 RBC 비율이 150% 미만으로 하락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뢰수준 상향 조정으로 RBC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중소형 보험회사는 자본을 확충해야 할 것이고, 그만큼 자본비용은 늘어나 시장 경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신뢰수준 상향 조정으로 보험시장 전반의 지급능력은 높아지겠지만, 보험회사 간 경쟁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시장의 과점 경향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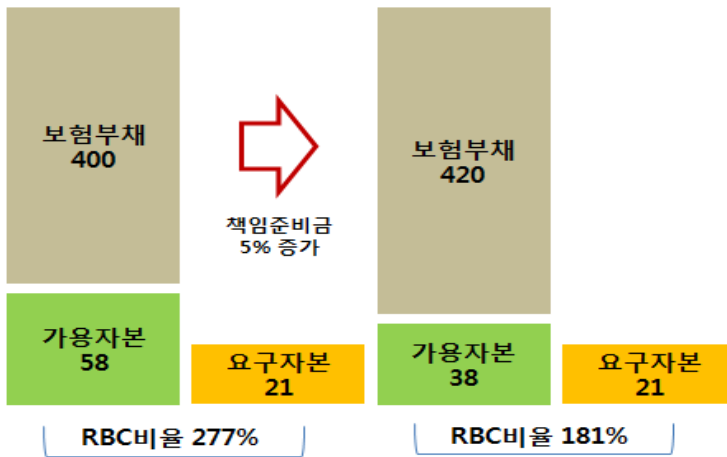
2. 부채시가평가의 영향

현행 부채적정성평가는 자산운용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채시가 평가에서는 자산운용수익률보다 낮은 무위험수익률이 할인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채시가평가는 현행 부채적정성평가보다 보험회사의 준비금을 증가시키고 그만큼 자본이 줄어들어 RBC 비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¹⁷⁾

예를 들어, <그림 IV-2>와 같이 책임준비금이 5% 증가하면 보험부채는 400에서 $420(=400 \times 1.05)$ 으로 $20(=420-400)$ 만큼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용자본이 58에서 $38(=58-20)$ 로 줄게 되어 RBC 비율은 $277(=58/21)$ 에서 $181(=38/21)$ 로 하락하게 된다.

17) 현행 부채적정성평가는 RBC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앞의 주석 6 참조.

〈그림 IV-2〉 부채시가평가에 따른 RBC 비율 감소



주: 업계평균 책임준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5% 증가를 예상함.
 자료: 조재린 외(2013), p. 14.

할인율의 변화는 장기보험계약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특히, 금리 확정형 상품의 준비금(부채) 가치는 할인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과거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상품의 비중이 큰 생명보험회사일수록 할인율 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반면,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을 함께 취급하면서 장기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의 비중이 절대적인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부채시가평가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부채시가평가가 생명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부채는 먼저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할인율의 인하에 따라 준비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도 조정되므로 부채시가평가의 영향이 확정금리형 상품에 비해 크지 않고,¹⁸⁾ 공시이율 변화에 대한 가정 설정 등이 어려워 2011년의 부채적정성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부채가치를 산출하였다. 즉, 2011년 부채적정성평가 시 금리연동형 상품의 책임준비금 대비 부채시가평가액 비율이 그대로 유지

18) 다만,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금리연동형 상품에도 최저보증이율은 적용되므로 저금리기조에 따라 시중금리가 최저보증이율 수준보다 낮아지게 되면 금리연동형 상품도 금리 확정형과 상품과 동일한 금리 역마진 위험에 노출된다.

된다고 가정하여 금리연동형상품의 부채가치를 산정하였다.

한편, 금리확정형 상품의 준비금 가치는 현행 부채적정성평가¹⁹⁾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되, 현행 부채적정성평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수익률 대신 IFRS 4 phase 2에서 제시하고 있는 할인율을 기초로 산출하였다. IFRS 4 phase 2는 할인율을 ‘무위험수익률 + 유동성프리미엄’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2년 11월 현재 국고채 10년물의 금리가 2.97%까지 하락한 바 있고, 향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부채시가평가에 적용될 무위험 수익률은 경우에 따라 3%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0.5%p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²⁰⁾ 이에 따라 부채시가평가에 적용될 할인율로 3.5%를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금리확정형 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가정은 최근의 상황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비용의 경우 보험금지급률은 2000~2012년 자료를 가중평균하여 경과연도별, 회사별, 판매채널별, 보험종목별로 산출하고, 사업비율은 2000~2012년 예정사업비 대비 실제 사업비 자료를 가중평균하여 사업비 종류(신계약비, 유지비, 수급비)별로 나누어 회사별, 보험종목별로 산출하였다. 또한, 신계약물량은 2012년 4~9월 초회보험료 실적 기준으로 신계약 물량을 추정하되, 한국은행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향후 초회보험료 기초 성장률을 3%로 설정하였다. 해지율은 2000~2012년 유지율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회사별, 판매채널별, 납입방법별, 보험종목별로 산출하되 경험자료가 부적절한 경우는 그룹 혹은 전사 실적을 사용하였다.

위의 가정을 적용한 현금흐름에 할인율 3.5%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을 금리확정형 상품의 부채시가평가 금액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회사에 따라 최대 16%까지 증가하여 5개 생명보험회사의 RBC 비율이 150%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높은 금

19) 현행 부채적정성평가 방법은 [부록 II]를 참조.

20) SolvencyII QIS5에서는 유로금리 0.53%, 달러금리 0.71%, 파운드금리 0.82%를 제시하고 있다. EIOPA(2012).

리의 금리확정형 상품의 비중이 큰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가가 두드러지며,²¹⁾ 2개 생명보험회사의 RBC 비율은 감독규정상 최저요구수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6〉 부채시가평가 시 RBC 비율별 생명보험회사 수

RBC 비율	100 미만	100~150	150~200	200 이상	합계
회사 수	2	3	5	13	23

여기서 부채시가평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보험회사는 주로 과거 높은 금리로 금리확정형 상품을 판매한 중·대형사라는 점에서 부채시가평가가 생명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3. RBC 강화와 부채시가평가의 병행 가능성

보험회사의 준비금을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규제의 변화가 보험회사 RBC 비율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에서 RBC 강화와 부채시가평가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RBC 강화는 요구자본을 증가시켜 RBC 비율의 분모를 키우고, 부채시가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증가는 가용자본을 감소시켜 RBC 비율의 분자를 줄이게 된다.²²⁾ 이로 인해 RBC 강화나 부채시가평가가 단독으로 시행될 경우에 비해 보험회사 RBC 비율은 더욱 크게 하락하게 될 것이다.

RBC 강화와 부채시가평가의 병행은 위에서 이미 설명한 RBC 강화의 영향분석 방법과 부채시가평가의 영향분석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21) 일부 외자계 보험사는 고금리 확정형상품의 비중이 크에도 불구하고 사차익의 규모가 커 부채가치의 증가가 크지 않다.

22) 부채 규모의 변화에 따른 위험노출규모의 변화가 요구자본에 미칠 영향은 여기서 고려하지 않는다.

가용자본 감소와 요구자본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여 생명보험회사 23개사 중 11개사가 RBC 비율 15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시가평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대형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7〉 RBC 강화와 부채시가평가 병행 시 RBC 비율별 생명보험회사 수

RBC 비율	100 미만	100~150	150~200	200 이상	합계
회사 수	5	6	5	7	23

더구나 수익성이 최근 3개년 ROA 평균을 지속한다는 가정에서 보험회사가 당기순이익 전액을 내부에 유보하더라도 RBC 비율 150%로 회복하는 데에는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생명보험회사가 5개 회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RBC 강화와 부채시가평가를 병행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수용능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된다.

만약 부채시가평가만 시행된다고 가정하더라도 RBC 비율 150% 회복에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RBC 강화 없이 부채시가평가만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당기순이익을 전액 유보해야 IFRS 4 phase 2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 부채시가평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의 수익성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규제 강화에 따라 RBC 비율 150%를 회복하는 데에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기순이익의 전액 유보가 현실적인 가정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내부유보 외에도 채권 발행,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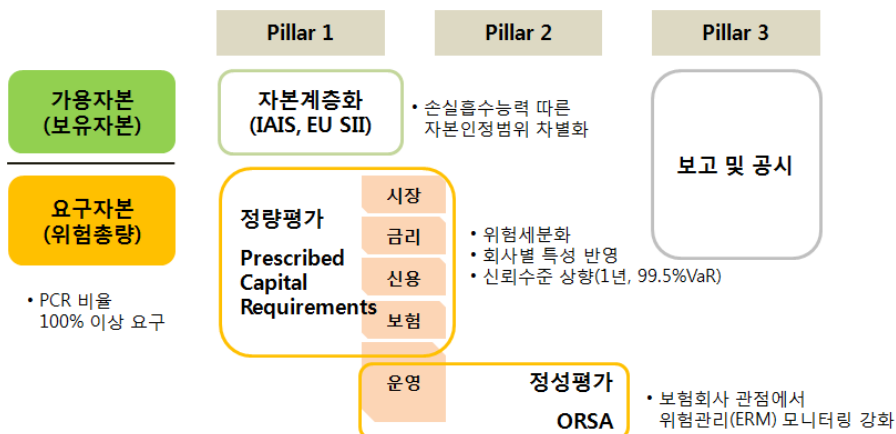
V. 국내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1. 지급여력규제의 국제적 정합성과 RBC 강화 계획 평가

가. 국제적 정합성 제고

현재의 국제적 지급여력규제 체계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EU Solvency II와 미국 RBC/SMI은 다른 감독철학과 접근방식을 가지고 감독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감독체계는 모두 정량평가 시 리스크 민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위험을 세분화하고, 회사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성평가를 강화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체제 모두 IAIS ICP와의 일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V-1〉 지급여력규제의 국제적 추세



자료: 조재린 외(2013), p. 18.

국내 지급여력규제는 정량평가 부분에서 2009년²³⁾ EU Solvency I 체계에서 미국식 RBC 체제로 전환하여 위험을 세분화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2012년에는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대차대조표 항목의 가용자본 인정범위를 차등하는 자본 계층화를 도입하였다. 즉, 미국식 RBC 도입으로 위험요인을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 위험 등 5개로 확대해 각 위험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고, 가용자본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국내 지급여력규제 체계는 미국식 RBC를 벤치마크 함과 동시에 Solvency II를 반영하여 요구자본 산출 기준을 1년 95% VaR(Value at Risk)로 통일하였다.²⁴⁾ 또한 RBC 정량평가를 2015년까지 강화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RAAS 제도를 통해 정량평가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운영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RAAS와 RBC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²⁵⁾

따라서 국내 지급여력규제는 위험세분화, 자본계층화, 정성평가 등 국제적 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의 체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IAIS가 제시한 ICP에 따라 보험업을 평가하고 있는 IMF의 FSAP 평가(2013)도 국내 지급여력제도에 대해 국제적 정합성을 대체로 갖추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⁶⁾

물론 현행 국내 지급여력규제의 정량평가를 개선할 여지는 많다. 회사별 특성 반영, 위험계수 산출 정교화, 장수위험 및 대재해위험 등의 반영은 향후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또한 정성평가에서도 국내 RAAS 제도는 감독 관점의 모니터링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23) 현행 RBC 제도는 '03년 "보험회사 리스크중심 감독 Master Plan"에 의거하여 업계 공동 T/F운영, 외부 연구용역, 국제자문역 자문, 해외사례 조사 및 수차례의 시험산출을 거쳐 '09년 시행되었고, 연착륙을 위해 기존 지급여력제도와 2년간 병행운영 후 본격 시행하였다.

24) 단, 변액보증 관련위험은 CTE를 사용한다.

25) 금융감독원(2012b).

26) 2014년 1월 현재 IMF FSAP 평가보고서가 공표되지는 않고 있다.

나. RBC 강화 계획 평가

지난 2012년 10월 국내 금융감독당국은 저금리 대응능력과 국제적 정합성 제고라는 목표를 두고 가용자본의 계층화, 요구자본 산출 시 신뢰수준 상향 조정 등을 늦어도 2015년까지 시행하는 내용의 RBC 강화 계획(〈표 II-1〉 참조)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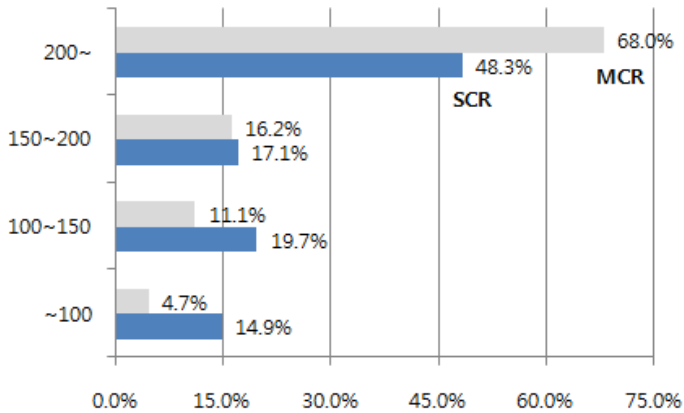
그 중에서도 보험회사가 노출된 위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 금리, 신용 위험의 신뢰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이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IAIS ICP 17이 제안하고 있는 높은 신뢰수준 적용과 지급여력평가의 위험 민감도 제고라는 원칙에 부합하며, 동 계획은 2013년 IMF의 금융부문평가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저금리 기조에서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국내 보험회사가 취약한 금리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RBC 강화 계획은 정량평가에 대해 3년이라는 짧은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종합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서 규제의 불확실성이 크다. 우선 2015년까지 RBC 신뢰수준을 99%로 상향하고 연결 RBC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은 다른 규제의 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이미 RBC 비율 150%를 적용하고 있는 관행과의 중복도 고려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보험시장에는 RBC 평가와 관련하여 부채적정성평가 강화, 표준이율 및 공시이율 등 보험료 관련 규제 등이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규제의 상호 작용에 대한 분석 없이는 RBC 강화 계획의 연착륙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제Ⅳ장의 영향 분석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정량평가의 변화는 상당한 논의와 영향평가를 거친 이후에야 시행되고 있다.

최근 EU도 역내 회원국의 여건을 고려하여 Solvency II를 2016년 이후에나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정량평가 시행 시기가 반복적으로 연기되면서 정성평가만이라도 먼저 시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U 역시 지난 10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계량영향평가(QIS)를 통해 Solvency II가 보험회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그 시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2011년 제5차 계량영향평가(QIS 5) 결과,

역내 보험회사의 14.9%가 SCR(지급여력)비율 100%에 여전히 미달하고 있는 것도 Solvency II의 2014년 시행이 2016년으로 연기된 이유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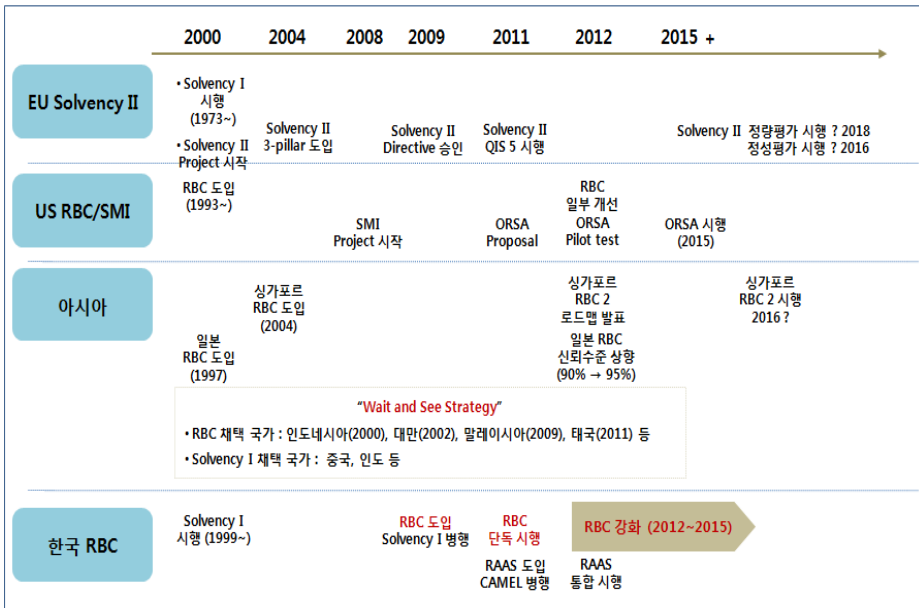
〈그림 V-2〉 Solvency I 대비 Solvency II 요구자본 수준 (QIS 5)



자료: EIOPA(2011), p. 25, p. 27.

한편, 유럽 이외의 지역은 지급여력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강화된 정량평가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자국의 보험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RBC/SMI를 통해 2015년 정성평가 시행을 확정된 반면,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대다수 나라들도 아직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호주, 일본,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호주를 제외하고는 정량평가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림 V-3〉 지급여력규제의 지역별 대응



자료: 조재린 외(2013), p. 19.

2. 지급여력규제 개선 로드맵

가. 종합 청사진

199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보험시장 자유화와 경쟁 촉진은 보험회사에 가격재량권을 부여하는 대신 장기보험의 특성상 보험회사가 장래 지급여력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한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최저가격 가이드라인(표준이율 및 표준책임준비금 제도)을 제시하고 지급여력(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감독정책이 진화해 왔다. 즉, 지급여력규제는 보험료 규제, 준비금 규제, 자산운용규제 나아가 예금자보호제도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그림 I-4〉 참조). 따라서 지급여력규제의 강화는 관련 규제 간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른 규제와의 조율이 부족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지난해의 표준이율 인하와 보험료 인상 억제 조치다. 표준이율 인하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얼마를 받든 간에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적립하여야 할 부채의 현재가치, 즉 준비금의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일종의 지급여력 보완장치다. 따라서 표준이율이 하락하면 보험금 원가가 상승하게 되므로 보험회사는 시장 경쟁을 고려하여 두 가지 가격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가 상승 이전의 보험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원가 상승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지급여력이 충분한 보험회사라면 시장경쟁을 고려하여 원가 상승 이전, 즉 표준이율 인하 전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초과 지급여력으로 원가 상승에 해당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지급여력감독의 우려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지급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회사가 시장 경쟁에 몰두하여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것은 장래 지급여력의 약화를 피할 수 없고, 부실 보험회사의 보험료 덤핑은 건전한 시장경쟁마저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지급여력감독에서 표준이율의 기능이며, 표준이율 인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금융감독당국은 이런 정상적인 경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표준이율을 인하한 금융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여 보험회사가 원가 상승에 따른 최저 보험료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 억제에 따른 부정적 효과는 보험회사 지급여력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당장 보험소비자가 지불할 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보험회사 부실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 다른 사례는 RBC 규제 강화에서 보험부채의 평가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급여력평가와 관련한 회계기준이 무엇이든 간에 향후 보험부채의 시가평가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RBC 산출에서 일반회계를 준용하든 별도의 감독회계를 적용하든 간에 지급여력감독이 지향하는 바가 보험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보험부채의 시가평가가 RBC 산출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IAIS ICP 17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IFRS를 수용한 형태의 감독규정이 지속된다면, 2018년의 RBC 산출에는 보험부채의 시가평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AIS ICP가 아직은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IFRS의 보험부채 시가평가는 2018년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시가평가에 대한 대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지급여력규제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지급여력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어느 부분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규제와의 조율과 지급여력규제 내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균형과 현재의 RBC 관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량평가는 위험 민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회사별 위험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계수를 정교화하고 다양한 위험을 고려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영향평가를 거쳐 종합적인 청사진 안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내 정량평가 관행은 모든 보험회사에 RBC 비율 150%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신뢰수준 상향 조정 효과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셈이어서 향후 정량평가의 개선과 회사별 차별화를 진행함에 따라 RBC 비율을 감독규정의 100%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ORSA로 대표되는 정성평가는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와 자본관리, 전략 수립 간의 연계에 주목한다. 즉 보험회사가 위험을 전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 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위험으로 인한 지급여력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지급여력규제 체제는 정량평가에 비해 비재무위험을 주로 다루는 정성평가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 최근의 국제적 논의 역시 정성평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정성평가 인프라가 정착된다면 내부모형제도의 시행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RBC 비율 150% 관행을 전제로 국내 지급여력규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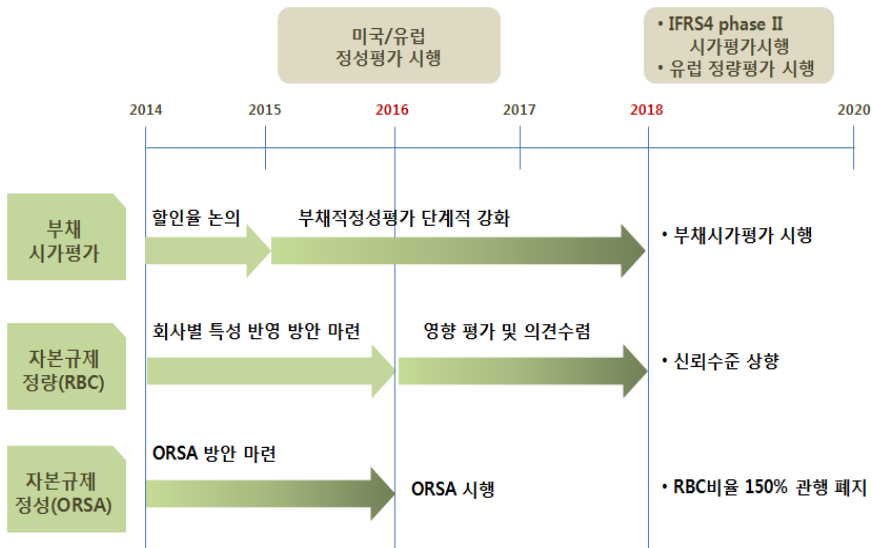
강화는 “정성평가 - 정량평가” 순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지급여력규제 로드맵 제안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국내 지급여력규제의 강화 로드맵으로서 본고는 “先 부채시가평가 대비와 정성평가 강화, 後 신뢰수준 상향과 같은 정량평가 강화”순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제Ⅳ장의 영향평가 결과, RBC 강화와 부채시가평가가 동시에 시행되면 당기순익을 전액 내부유보 하더라도 RBC 비율 150% 회복에 회사에 따라서는 5년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RBC 산출에 IFRS의 부채시가평가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2018년까지 IFRS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4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RBC 강화와 부채시가평가는 분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부채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할인율에 대한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여 할인율 기준 강화를 위주로 부채적정성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IFRS 4 Phase 2 도입이 RBC 규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V-4〉 지급여력 규제 로드맵 제안



자료: 조재린 외(2013), p. 34.

다음으로 지급여력규제 강화는 부채시가평가 일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량평가는 2016년까지 회사별 특성 반영 방안을 마련하고 2년간의 영향평가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부채시가평가가 적용 시점인 2018년 이후부터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모든 보험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행 RBC 비율 150% 유지 관행의 철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ORSA와 같은 정성평가는 서두를 필요가 있다. EU Solvency II나 미국 RBC/SMI, ORSA 시행 계획을 밝힌 아시아 주요국의 정성평가 시행 시기는 2016년 전후로 예상된다. ORSA가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유인을 높이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2016년부터 ORSA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3. 금융감독당국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지급여력규제에 따른 보완 조치로 금융감독당국은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상시 발행 요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위험관리수단으로서 재보험 및 파생상품에 관한 규제를 개선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RBC나 회계규제 강화에 따라 보험회사는 가용자본 감소와 요구자본 증가에 직면할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적정 RBC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수단과 위험경감수단에 대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여 보험회사가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능동적으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기순익의 내부유보, 채권 발행, 유상증자 등은 현재도 가능한 수단이지만, RBC 비율 150% 이상이 요구되는 감독 관행이 이뤄지는 가운데 RBC 비율 150% 이하에서만 발행 가능한 후순위 채권은 높은 자본조달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저금리와 가격규제로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는 유상증자도 쉽지 않다.

한편, 현행 RBC 산출에서 재보험 등 위험경감수단을 활용한 위험 경감 효과는 사실상 보험위험에만 한정되고 있다. 국내에서 재보험사²⁷⁾는 보험위험을 이전하는 재보험만 다룰 수 있고, 이에 금리위험이나 변액보험 보증위험 등에 대해 파생상품 등 다른 위험전가수단을 활용하더라도 그 위험 경감 효과는 RBC 비율에 반영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주된 위험관리수단인 재보험이나 파생상품의 활용이 보수적으로 규제되고 있어서 지급여력 관련 규제가 보험회사의 능동적 위험관리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보험 및 파생상품 규제를 개선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격규제는 보험회사의 적정 위험관리에 따라 나타난 결과를 보험료 등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여 지급여력규제가 의도한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강화 유인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 덤

27) 여기서 재보험사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전업재보험사를 의미한다.

평에 대해서는 표준책임준비금제도 및 지급여력규제를 통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보장에 필요한 충분한 보험료를 확보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험료 우려에 대해서는 공정경쟁감독기구의 역할 확대와 함께 근본적으로 소비자가 정보에 기초하여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규율을 강화하고 판매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은 지급여력규제와 관련 규제의 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시장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험회사에는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국내외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보험회사는 시장 주도자로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전사적 위험관리를 통해 보험회사는 적절한 위험전가수단을 선택하고 보유 위험에 대한 적정 보험료를 산출해 상품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데이터 확보와 인력 양성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지급여력규제와 같은 간접규제가 고도화될수록 데이터와 시스템 측면 모두에서 감독당국 역시 보다 전문적인 감독인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이익의 적극적인 내부유보를 통해 실질적인 자본 확충에 주력하는 등 능동적으로 지급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부채시가평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대형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점진적으로 자본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본고의 결론에는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 남아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연구를 기대한다. 먼저, 본고에서 제시된 규제 시행의 선후 관계는 IFRS의 보험부채 시가평가가 RBC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시나리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이며, 그 경우 본고에서 제시된 로드맵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와 같이 부채평가 결과가 RBC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가 유지되는 시나리오 등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금융감독당국의 보험료 인상 억제에는 지급여력 감독 측면이 아닌 보험회사의 수익 구조에 대한 불신 등 다른 측면의 고려가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안에 대한 공론화와 시장 이해관계자 간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건전성 및 회계 규제의 강화 등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유상증자, 채권 발행, 재보험, 파생상품 등 대응수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2012a), 보험회사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BC) 해설서, 업무참고자료.
_____ (2012b), 보험회사 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제도(RAAS) 해설서, 업무참고
자료.
- 김해식 · 조재린(2012),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체계 개혁 동향 및 시사점」,
『KiRi Weekly』, 179호, 보험연구원, 2012. 4.23.
- _____ (2013),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보험회
사 재무건전성 규제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리스크관리학회·보험연구원 정책
심포지엄.
- 문재익(2007), 「국제보험회계기준 제정에 따른 리스크중심 감독제도 추진방향」, 『손
해보험』, 2월호, 손해보험협회.
- 보험연구소(2001),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조사보고서, 보험개발원.
- 오창수(2012), 『Solvency 2 표준 · 내부모형 도입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계리학회.
- 장동식(2009),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보험연구원.
- 조재린 · 김해식 · 김석영(2013), 「국내 재무건전성 규제 로드맵」, 보험회사 재무건
전성 2020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의 현재와 미래, 보험연구원 정책세
미나.
- 허창언(2012),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정책방향」, 『손해보험』, 10월호, 손해보험
협회.
- Brahin, P. (2012), “Solvency Modernization”, Asia Insurance Review
(www.asisinsurancereview.com)
- Campbell, M., P. (2012), “Solvency II, NAIC SMI and Risk Management”, Society
of Actuaries(SOA) Annual Meeting.
- CGFS(2011), “Fixed income strategies of insurance companies and pension
funds”.

EIOPA(2011), “EIOPA Report on the fifth Quantitative Impact Study (QIS5) for Solvency II”, EIOPA-TFQIS5-11/001.

IASB(2013), “Overview of the Insurance Contract Project”.

Vaughan, T.(2009), “The Implication of Solvency II for U.S. Insurance Regulation”, Networks Finance Institute, Indiana State University.

IAIS ICP(<http://www.iaisweb.org/ICP-on-line-tool-689>)

부 록 I. 가용자본의 산출²⁸⁾

지급 여력 금액	· 합산항목(1) - 차감항목(2) + 자회사 자본부족(3)	
	생보사	손보사
(1) 합 산 항 목	기본 자본	• 자본금, 자본잉여금(누적적 우선주와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은 제외),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5% 이내 • 관계기업 또는 종속기업(집합투자기구는 제외) 투자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한 평가금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보완 자본	•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 및 부채적정성평가 관련 추가적립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저축성보험료 중 해지 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여기서 부채적정성평가로 추가 적립한 금액을 제외)
(2) 차감항목	보완 자본	• 정상·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 후순위채무액·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 15% 초과 금액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보완 자본	•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 금융자산평가손익 등 •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3) 자회사 자본부족	•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등 시장성을 측정하기 곤란한 무형자산 • 선급비용, 이연법인세자산,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액 • 지분법적용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누적미실현평가손익 • 미처리결손금 등으로 자본 내 적립하지 못한 고정이하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준비금 상당액 •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종속기업인 사무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기주식 포함), 부의 지분법자본변동	
(3) 자회사 자본부족	•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자본부족 금액 중 지분을 상당액 •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자회사 순자산 부족 금액 중 지분을 상당액	

28) 금융감독원(2012a). 자세한 내용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1조 참조.

부 록 Ⅱ. 부채적정성평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기준²⁹⁾

제1장 총칙

- 1-1. (목적) 이 기준은 감독규정 제6-11조의2, 제6-18조의3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2. (적용범위) 『I. 보험계약 분류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으로 분류된 계약과 임의배당요소를 포함한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 1-3. (용어의 정의)
- 가. 현행추정 가정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사용되는 가정을 의미한다.
 - 나. 대표계약은 보유계약의 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되는 표본계약을 의미한다.
 - 다. 순현금흐름은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추정년도 별 현금 유입액에서 유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 라. 기준금리는 미래운용자산이익률 산출 시 기준이 되는 무위험수익률을 의미한다.
 - 마. 보유자산은 평가일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운용자산을 의미한다.
 - 바. 신규자산은 보유자산의 만기, 이자 및 배당 등의 재원과 평가일 현재 보유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순현금흐름을 재원으로 투자되는 운용자산을 의미한다.

29)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26).

제2장 평가기준 일반론

2-1. (평가대상 책임준비금)

가. 평가대상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손해보험은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증준비금으로 하고, 보험료적립금은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제6-3조에 의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8>에 따라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하지 않는 보험종목은 제외한다.

나. 회사가 현행추정치를 사용하여 평가한 부채와 평가시점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2. (미래현금흐름)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회계연도 말 현재의 보험계약(회계연도 말과 직전 분기 말 보유계약 간 중대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 말의 보유계약 적용 가능)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유입·유출액(옵션·보증 및 보험금처리원가 포함)의 현행 추정치를 반영한다.

2-3. (평가단위)

가. 배당 및 금리확정여부를 구분하여 평가하되, 동종 및 유사 위험군 등으로 보다 세분화된 단위에서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세분화된 단위는 매회계연도 별로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은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하고,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중 <부표2. 보험의 종류>에서 정한 대분류기준, 자동차보험의 경우 담보별(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차량, 무보험, 기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4. (상계단위 및 추가적립 계정)

가. 2-3의 평가단위에 따라 각 단위별 잉여·부족분에 대해 회사 전체수준에서 상계 할 수 있다(단, 손해보험의 경우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제외),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 자동차보험 간 잉여·부족분을 상계할 수 없다.).

- 나. 평가결과 추가 적립분은 평가단위에 따라 보험료적립금(손해보험은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포함)은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계상한다.
- 2-5. (평가시점) 회계연도 말에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분·반기 검토 시 현행추정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 말과 동일 수준으로 실시한다.
- 2-6. (문서화) 평가대상 단위별 잉여·부족액, 현행추정 가정의 세부산출내용과 직전평가시점 대비 가정의 변화수준과 변화근거, 가정의 변화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금액의 변동,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등 회계처리 세부 내역을 문서화한다.

제3장 가정의 산출방법

3-1. (개요)

- 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사용되는 가정은 현행추정에 의해 산출한다.
- 나. 현행추정 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의 특성·규모에 따라 과거의 경험치, 미래 추세 등을 반영한다.
- 다. 연령, 성별, 납입방법, 경과기간, 판매채널 등에 따른 차이가 중요한 경우 구분하여 산출한다.
- 라.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사용된 가정의 산출기준은 매회계연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 마. 영업개시 후 5년 이내 신설사의 경우 회계연도 말로부터 최근에 판매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가정을 사용할 수 있다.
- 바. 보험회사는 미래현금흐름 현행추정치 산출과 관련한 위험률 통계자료의 집적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1) 통계책임자 지정
- (2) 통계관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 (3) 통계담당자 자격요건 및 통계담당자에 대한 교육
- (4) 통계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점검
- (5) 보험요율산출기관에의 통계제공 절차
- (6) 통계관리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
- (7) 기타 통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2. (사업비율)

가. 회사의 최근 1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회사의 미래 사업비정책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일시적 비용은 사업비율 산출에 반영하지 않는다.

나. 사업비율은 신계약비와 유지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 (1) 신계약비는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모집수당규정 등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미래에 실제 집행될 금액 기준으로 산출한다.
- (2) 유지비는 보유계약건수 또는 수입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3-3. (해약률)

가. 회사의 최근 5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최소 10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나. 계약건수,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기준 중 회사실정 또는 상품특성을 반영하여 사용하고, 납입상태, 수당정책, 세제혜택기간, 시중금리동향, 계약부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 금리시나리오에 따라 해약률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4.(위험률)

가. 위험률은 위험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로 산출한다. 다만, 보험료산출

시 적용한 위험률 대비 현행추정위험률로 산출할 수 있다.

나. 회사의 최근 5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최소 10년)로 구분하여 위험률을 산출하고, 미래 회사의 계약인수정책 등 위험률 관리정책을 반영할 수 있다.

다. 위험률은 동종 또는 유사한 보험상품별로 산출하거나 보험상품의 위험별로 세분화하여 산출한다.

라. 회사경험통계에 관찰되지 않은 위험률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최근에 판매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위험률을 사용한다.

제4장 할인율 가정

4-1. (개요)

가. 미래 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할인율은 미래운용자산이익률로 한다.

나. 미래운용자산이익률은 회사의 과거 운용자산실적에 미래추세, 회사의 투자전략 등 미래의 전망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4-2. (산출기준)

가. 할인율은 운용자산 분류, 기준금리 결정, 운용자산별 이익률 산출, 회사의 미래운용자산이익율 산출의 단계를 따른다.

나. 회사는 운용자산을 고정수익자산, 주식, 부동산, 해외투자자산, 기타자산 등 최소 5개로 구분하여 미래운용자산이익률을 산출하되, 기타자산 중 총자산 대비 구성비가 5% 이상인 자산은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한다.

다. 보유자산 중 고정수익자산 이익률은 해당 자산의 만기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한다.

라. 신규자산 중 고정수익자산 이익률은 기준금리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 (1) 기준금리는 회사가 현행추정하거나, 감독원이 제시하는 아래 시나리오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감독원이 제시하는 200개의 연도별 무위험수익률(1년·3년·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시나리오
 - － 감독원이 제시하는 8개의 연도별 무위험수익률(1년·3년·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시나리오
- (2) 위험스프레드는 최근 5년 회사경험치에 미래 전망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 마. 고정수익자산 이외 자산의 이익률은 최근 5년 회사경험치에 미래 전망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 바. 회사전체 운용자산이익률은 보유자산과 신규자산의 자산별 운용자산금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며, 평가시점의 자산 구성비가 미래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다만, 투자전략 등의 명확한 변동이 있다면 자산 구성비를 변경할 수 있다.
- 사.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금액은 라.(1)에서 정한 회사의 현행 추정에 의해 산출한 금액, 감독원이 제시하는 200개 시나리오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 또는 감독원이 제시하는 8개 시나리오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 중 선택할 수 있다.

4-3.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금액의 최저한도)

- 가. 신규자산 전체의 미래운용자산이익률 산출을 위해 연도별 무위험수익률시나리오에 가산되는 위험스프레드는 (1)의 값으로 한다. 다만, 미래 투자전략의 변경 등 그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는 (2)의 값을 사용할 수 있다.

(1) 회사의 위험스프레드: 최근 7개년 평균위험스프레드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값

- － 최근 7개년 [회사의 연도별 운용자산이익률*·기준금리**]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5개년 평균

* 회사의 연도별 운용자산이익률은 ‘〈부표1〉 운용자산이익률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사용한다.

** 기준금리: 운용자산이익률 산출연도의 최근 5년간 국고채(5년만기)의 평균수익률

(2) 산업 위험스프레드: 가.(1)의 회사의 위험스프레드를 평가시점의 회사별 운용자산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감독원이 산출·제시한 값. 다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하여 산출·제시

나. 4-2.사항의 금액은 다음 (1) 또는 (2)의 금액보다 적을 수 없다.

(1) 4-2.라.(1)의 감독원이 제시하는 200개의 연도별 무위험수익률(5년만기 국고채수익률) 시나리오에 가항의 위험스프레드가 가산된 미래운용자산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Percentile(65) 해당액

(2) 4-2.라.(1)의 감독원이 제시하는 8개의 연도별 무위험수익률(5년만기 국고채수익률)시나리오 중 Percentile(65) 연도별 무위험수익률시나리오에 가항의 위험스프레드가 가산된 미래운용자산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제5장 기타사항

5-1. (대표계약의 검증)

가. 평가대상 보험계약 중 대표(표본)계약으로부터 현금흐름을 산출할 경우 산출된 현금흐름의 대표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나. 대표계약을 설정하는 기술적인 방법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대표계약으로 산출된 금액이 보고시점 말 기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항목의 금액과 비교하여 합리적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전체계약에 대해서 현금흐름을 추정하였을지라도 가 내지 나항의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5-2. (프로젝션 기간)

가. 장래 현금흐름 검토기간은 평가 대상 보유계약의 만기까지의 기간으로 산출

하여야 한다. 다만, 만기까지의 산출과 동일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특정기간 (예를 들면 30년)까지의 현금흐름을 검토하는 경우 판단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프로젝션기간 말 잔존하는 계약은 모두 해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5-3. (감독원장의 시정요구) 감독원장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한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선임계리사에게 소명토록 하고, 적정성 평가방법의 개선 또는 준비금의 추가 등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개선,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정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정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④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이상우, 최원 2013. 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변혜원,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4.3

■ 연차보고서

- 제1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2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3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4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5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6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영문발간물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1 / KIRI, 2012.8
 제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2 / KIRI, 2012.10
 제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2 / KIRI, 2012.12
 제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2 / KIRI, 2013.4
 제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3 / KIRI, 2013.11
 제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1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자약력

조재린

Queen's University 통계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jrincho@kiri.or.kr)

김해식

St. John's University 경영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haeskim@kiri.or.kr)

김석영

University of Arizona 수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skim@kiri.or.kr)

정책보고서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발행일 2014년 3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 및
인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00-8

정가 10,000원